



## (19) 대한민국특허청(KR)

## (12) 등록특허공보(B1)

(51) 국제특허분류(Int. Cl.) **A41D 13/08** (2006.01)

(52) CPC특허분류

**A41D** 13/081 (2013.01) A41D 2300/32 (2013.01)

(21) 출원번호 10-2021-0186376

(22) 출원일자 **2021년12월23일** 심사청구일자 **2021년12월23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20100116158 A\*
KR200389554 Y1\*
\*는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45) 공고일자 2022년09월22일

(11) 등록번호 10-2445898

(24) 등록일자 2022년09월16일

(73) 특허권자

#### 허기태

경기도 이천시 증신로291번길 119-5, 501호 (송정동)

(72) 발명자

## 허기태

경기도 이천시 증신로291번길 119-5, 501호 (송정 동)

## 김창호

경기도 이천시 향교로53번길 12, 201호

(74) 대리인

특허법인 아이퍼스

전체 청구항 수 : 총 4 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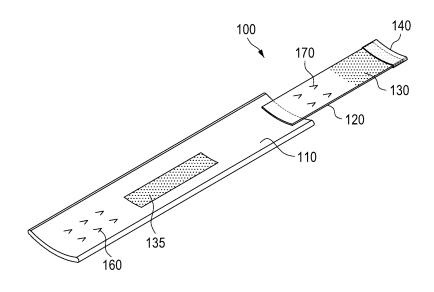
심사관 : 황경숙

#### (54) 발명의 명칭 탄성의 금속 스트립을 갖는 손목보호대

#### (57) 요 약

본 발명은 손목보호대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탄성의 금속 스트립을 갖는 손목보호대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폭에 비해 길이가 길게 구성되고, 만곡된 단면을 가지며, 펼쳐진 상태에서 상기 단면에 힘이 가해지면 탄성으로 손목에 감기는 금속스트립(150); 금속스트립(150)의 외면을 감싸고, 손목에 접하는 보호패드(110); 보호패드(110)의 일단에 부착되는 인장밴드(120); 인장밴드(120)의 단부에 형성된 그립부(140); 보호패드(110)의 오목면에 부착된 제 1 벨크로(135); 및 제 1 벨크로(135)에 대응하도록 인장밴드(120)에 부착되는 제 2 벨크로(13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성의 금속스트립을 갖는 손목보호대가 제공된다.

## 대 표 도 - 도4



(52) CPC특허분류 A41D 2300/33 (2013.01) A41D 2300/332 (2013.01)

## 명 세 서

## 청구범위

#### 청구항 1

폭과 길이의 비율이 1:4 내지 1:5인 박판 스틸로 구성되고, 만곡된 단면을 가지며, 펼쳐진 상태에서 상기 단면에 힘이 가해지면 탄성으로 손목 둘레에 감기는 금속스트립(150);

- 상기 금속스트립(150)의 외면을 감싸고, 손목에 접하는 보호패드(110);
- 상기 보호패드(110)의 일단에 부착되는 인장밴드(120);
- 상기 인장밴드(120)의 단부에 형성된 그립부(140);
- 상기 보호패드(110)의 오목면에 부착된 제 1 벨크로(135); 및
- 상기 제 1 벨크로(135)에 대응하도록 상기 인장밴드(120)에 부착되는 제 2 벨크로(130);를 포함하고,
- 상기 보호패드(110)는 직물 또는 TPU(열가소성 폴리우레탄)이며,
- 상기 보호패드(110)의 오목면에 대응하는 볼록면에는 복수의 돌기로 이루어진 돌기밴드(210)가 더 형성되고,
- 상기 돌기밴드(210)는 우레탄 또는 실리콘으로 성형되고,
- 상기 돌기밴드(210)의 길이방향 간격은 2 ~ 3 c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성의 금속스트립을 갖는 손목보호대.

####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인장밴드(120)는 길이방향을 따라 신축력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성의 금속스트립을 갖는 손목보호 대.

## 청구항 3

삭제

#### 청구항 4

삭제

#### 청구항 5

삭제

####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오목면 상에서 상기 보호패드(110)의 타단과 상기 제 1 벨크로(135) 사이에 위치하며, 길이방향을 따라 이 격된 복수개의 제 1 후크(160); 및

상기 제 2 벨크로(130)에 인접하게 위치하며, 복수의 제 1 후크(160)들 중 적어도 하나에 걸리도록 구성된 제 2 후크(170)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성의 금속스트립을 갖는 손목보호대.

####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후크(160)와 상기 제 2 후크(170)는 톱니 형상의 단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성의 금속스트립을 갖는 손목보호대.

#### 청구항 8

삭제

#### 발명의 설명

##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손목보호대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탄성의 금속 스트립을 갖는 손목보호대에 관한 것이다.

## 배경기술

- [0002] 헬스 운동 중 또는 중량물을 다룰 때, 손목을 보호하기 위해 손목보호대를 사용한다. 도 1은 종래의 손목보호대의 평면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손목보호대(10)는 손목을 감싸는 보호패드(20)와 제 1, 2 벨크로(24, 50)로 구성된다. 이러한 종래의 손목보호대(10)는 보호패드(20)를 손목에 임시로 두른 후, 인장밴드(30)를 당겨서 제 2 벨크로(50)가 제 1 벨크로(24)에 맞물리면서 위치고정되는 방식이다.
- [0003] 이와 같은 종래의 손목보호대는 사용자 스스로 착용하거나 벗는 사례가 많았다. 그런데, 자신의 왼쪽 손목에 손목보호대를 임시로 돌리고 인장밴드(30)를 당겨 벨크로 체결하기가 쉽지 않았다. 인장밴드(30)를 당길 때 보호 패드(20)가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무릎으로 누르거나 턱으로 누르면서 착용하곤 하였다.
- [0004] 특히 왼쪽 손목에 대한 착용방식을 오른쪽 손목에 대해서도 반복해야 했기 때문에 손목보호대를 스스로 단단히 체결하기 어려웠다. 오른쪽잡이의 경우 오른손으로 왼쪽 손목에 착용할 수 있으나 왼손으로 오른쪽 손목에 착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 일부 사례에서는 타인에 의한 착용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타인이 없는 경우에는 매우 불편하였다.

#### 선행기술문헌

## 특허문헌

[0005] (특허문헌 0001) 1. 대한민국 실용신안공개 제20-1999-0041563호(미아방지용 손목밴드),

(특허문헌 0002) 2. 대한민국 실용신안공개 제20-2011-0000416호(어린이용 탄성 밴드).

#### 발명의 내용

#### 해결하려는 과제

- [0006]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혼자서도 손쉽게 착용할 수 있는 탄성의 금속 스트립을 갖는 손목보호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 [0007] 다만, 본 발명에서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들은 이상에서 언급한 기술적 과제들로 제한되지 않으며, 언급하지 않은 또 다른 기술적 과제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 과제의 해결 수단

- [0008]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폭에 비해 길이가 길게 구성되고, 만곡된 단면을 가지며, 펼쳐진 상태에서 상기 단면에 힘이 가해지면 탄성으로 손목에 감기는 금속스트립(150); 금속스트립(150)의 외면을 감싸고, 손목에 접하는 보호패드(110); 보호패드(110)의 일단에 부착되는 인장밴드(120); 인장밴드(120)의 단부에 형성된 그립부(140); 보호패드(110)의 오목면에 부착된 제 1 벨크로(135); 및 제 1 벨크로(135)에 대응하도록 상기인장밴드(120)에 부착되는 제 2 벨크로(13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성의 금속스트립을 갖는 손목보호대가 제공된다.
- [0009] 또한, 인장밴드(120)는 길이방향을 따라 신축력이 있다.
- [0010] 또한, 폭 : 상기 길이의 비율은 1 : 4 내지 1 : 5이다.

- [0011] 또한, 보호패드(110)는 직물 또는 TPU(열가소성 폴리우레탄)이다.
- [0012] 또한, 금속스트립(150)은 박판 스틸이다.
- [0013] 또한, 오목면 상에서 상기 보호패드(110)의 타단과 제 1 벨크로(135) 사이에 위치하며, 길이방향을 따라 이격된 복수개의 제 1 후크(160); 및 제 2 벨크로(130)에 인접하게 위치하며, 복수의 제 1 후크(160)들 중 적어도 하나에 걸리도록 구성된 제 2 후크(170)를 더 포함한다.
- [0014] 또한, 제 1 후크(160)와 제 2 후크(170)는 톱니 형상의 단면이다.
- [0015] 또한, 보호패드(110)의 오목면에 대응하는 볼록면에는 복수의 돌기로 이루어진 돌기밴드(210)가 더 형성되고, 돌기밴드(210)는 우레탄 또는 실리콘으로 성형되고, 돌기밴드(210)의 길이방향 간격은 2 ~ 3 cm이다.

#### 발명의 효과

- [0016]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르면, 타인의 도움없이 혼자서도 손쉽게 손목보호대를 착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턱으로 누르거나 무릎에 대고 착용하는 불편함을 생략할 수 있다.
- [0017] 또한, 탄성의 금속 스트립을 이용하므로써 신속하고 간단하게 착용할 수 있으며 쉽게 조일 수 있다.
- [0018] 그리고, 오른손잡이 또는 왼손잡이와 무관하게 왼손과 오른손에 쉽게 착용이 가능하다.
- [0019] 다만, 본 발명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이상에서 언급한 효과들로 제한되지 않으며, 언급하지 않은 또 다른 효과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20] 본 명세서에서 첨부되는 다음의 도면들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예시하는 것이며, 후술하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본 발명의 기술사상을 더욱 이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본 발명은 그러한 도면에 기재된 사항에만 한정되어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도 1은 종래의 손목보호대의 평면도,

도 2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탄성의 금속 스트립을 갖는 손목보호대의 사시도,

도 3은 도 2 중 A-A 방향의 단면도,

도 4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탄성의 금속 스트립을 갖는 손목보호대의 사시도,

도 5는 도 4에 도시된 손목보호대(100)를 손목에 차고 당기는 상태의 부분 단면도,

도 6은 도 5의 상태에서 제 1, 2 벨크로(135, 130)를 체결하는 상태의 부분 단면도,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손목보호대(100)를 손목에 착용한 상태의 사시도,

도 8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탄성의 금속 스트립을 갖는 손목보호대의 사시도이다.

####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 [0021] 아래에서는 첨부한 도면을 참고로 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에 관한 설명은 구조적 내지 기능적 설명을 위한 실시예에 불과하므로,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본문에 설명된 실시예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즉, 실시예는 다양한 변경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으므로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기술적 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균등물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 제시된목적 또는 효과는 특정 실시예가 이를 전부 포함하여야 한다거나 그러한 효과만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이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 [0022] 본 발명에서 서술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 [0023] "제1", "제2" 등의 용어는 하나의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소로부터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 용어들에 의해 권리범위가 한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어, 제1 구성요소는 제2 구성요소로 명명될 수 있고, 유사하게 제2 구성요소도 제1 구성요소로 명명될 수 있다. 어떤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연결되어" 있다고 언급된 때에

는, 그 다른 구성요소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중간에 다른 구성요소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어떤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언급된 때에는 중간에 다른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다른 표현들, 즉 "~사이에"와 "바로 ~사이에" 또는 "~에 이웃하는"과 "~에 직접 이웃하는" 등도 마찬가지로 해석되어야 한다.

- [0024] 단수의 표현은 문맥상 명백하게 다르게 뜻하지 않는 한 복수의 표현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포함하다" 또는 "가지다" 등의 용어는 설시된 특징,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분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이 존재함을 지정하려는 것이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특징이나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분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들의 존재 또는 부가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0025] 여기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들은 다르게 정의되지 않는 한, 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용어들은 관련 기술의 문맥상 가지는 의미와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본 발명에서 명백하게 정의하지 않는 한 이상적이거나 과도하게 형식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 [0026] 제 1 실시예의 구성

- [0027]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바람직한 실시예의 구성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손목보호대(100)를 손목에 착용한 상태의 사시도이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손목보호대(100)는 왼쪽 손목과 오른쪽 손목에 각각 독립적으로 착용이 가능하다.
- [0028] 도 2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탄성의 금속 스트립을 갖는 손목보호대의 사시도이고, 도 3은 도 2 중 A-A 방향의 단면도이다. 도 2 및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금속스트립(150)은 박판 스틸이고, 폭에 비해 길이가 길게 구성된다. 구체적으로는 폭 : 길이의 비율은 1 : 4 내지 1 : 5이다. 비율이 1 : 4 미만이면 폭이 너무 두 꺼워서 손목의 움직임이 제한을 받는다. 비율이 1 : 5를 초과하면 폭이 너무 가늘어서 탄성을 이용해서 쉽게 착용되지 못한다. 본 실시예에서 금속스트립(150)의 폭은 5cm이고, 길이는 22 cm이다.
- [0029] 금속스트립(150)은 만곡된 단면을 가지며, 펼쳐진 상태에서 볼록한 단면에 수직한 충격력이 가해지면 탄성으로 손목에 감기도록 구성된다. 금속스트립(150)은 어린이용 팔찌 등에 사용되곤 하였다.
- [0030] 보호패드(110)는 금속스트립(150)의 외면을 감싸고, 손목(180)에 접하는 직물또는 TPU(열가소성 폴리우레탄)이다. TPU는 고무의 탄성을 가진 우레판이다. TPU는쉽게 휘어지고 탄성이 있으며 인체와 환경에 무해하다. 보호패드(110)는 금속스트립(150)과 함께 변형된다.
- [0031] 인장밴드(120)는 보호패드(110)의 일단에 부착되고, 길이방향을 따라 신축력이 없거나 신축력을 가질 수 있다. 인장밴드(120)는 보호패드(110)의 폭에 비해 약 절반 정도의 폭을 갖는다. 인장밴드(120)는 5 cm ~ 15 cm의 길 이를 갖는다.
- [0032] 그립부(140)는 인장밴드(120)의 자유단부에 형성되고, 손으로 잡고 당기기 편하도록 구성된다. 이를 위해 그립부(140)는 인장밴드(120)를 접어서 재봉질함으로써 형성할 수도 있고, 별도의 합성수지재나 고무를 체결할 수도 있다.
- [0033] 제 1 벨크로(135)는 공지의 구성이며 제 2 벨크로(130)에 면접촉함으로써 체결력을 발휘하고 손으로 잡아 떼어 낼 수 있다. 제 1 벨크로(135)는 보호패드(110)의 오목면에 길이방향을 따라 부착된다. 사용자에 따라 손목 굵기가 다르므로 제 1 벨크로(135)는 5 cm ~ 10cm 정도의 길이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 [0034] 제 2 벨크로(130)는 손목(180)에 감긴 제 1 벨크로(135)에 대응하도록 인장밴드(120)의 배면(도 2 기준)에서 그립부(140)에 인접하게 부착된다.
- [0035] 이하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손목보호대(100)의 착용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사용자는 먼저 인장밴드 (120)를 손바닥에 쥐고, 엄지손가락이 보호패드(110)에 위치하도록 한다. 이때, 보호패드(110)는 금속스트립 (150)의 탄성에 의해 자립된다.
- [0036] 그 다음, 왼쪽 손목을 향해 보호패드(110)의 중간 영역을 가볍게 내려친다. 그러면, 보호패드(110)의 볼록한 단면에 수직한 충격력이 가해지면 탄성으로 손목에 둥글게 감기게 된다.
- [0037] 그 다음, 인장밴드(120)를 손목(180) 주위로 돌려서 제 2 벨크로(130)가 제 1 벨크로(135)에 닿게 한다. 그 다음, 손가락으로 제 1, 2벨크로(135, 130)를 눌러서 결합을 완성한다. 오른쪽 손목에 대해서도 전술한 과정이 대 칭적인 이루어진다. 왼손으로 손목보호대(100)를 잡고 오른쪽 손목(180)에 내리치는 과정이므로 서툰 왼손이라

도 확실하게 손목보호대(100)를 착용할 수 있다.

[0038] 손목보호대(100)의 분리과정은 손으로 제 1, 2 벨크로(135, 130)를 분리한 뒤 보호패드(110)를 떼어내서 펼치면 된다.

#### [0039] 제 2 실시예의 구성

- [0040]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바람직한 실시예의 구성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탄성의 금속 스트립을 갖는 손목보호대의 사시도이고, 도 5는 도 4에 도시된 손목보호대(100)를 손목에 차고 당기는 상태의 부분 단면도이며, 도 6은 도 5의 상태에서 제 1, 2 벨크로(135, 130)를 체결하는 상태의 부분 단면도이다. 제 2 실시예의 구성 중 제 1 실시예에 동일한 구성은 그대로 적용된다. 이하에서는 제 2 실시예의 특징적인 구성과 동작에 대해 설명한다.
- [0041] 복수개의 제 1 후크(160)는 보호패드(110)의 오목면 상에서 보호패드(110)의 자유타단과 제 1 벨크로(135) 사이에 위치하며, 길이방향을 따라 이격된다. 제 1 후크(160)는 2개가 한쌍을 이루며 나란히 배치되고, 톱니 형상의 단면을 갖는다. 제 2 실시예에서는 3쌍의 제 1 후크(160)가 구성된다. 이를 위해 제 1 후크(160)는 플라스틱 사출물이거나 금속의 후크일 수 있다. 제 1 후크(160)는 손목보호대(100)가 손목(180)에 좀 더 강한 조임을 갖도록 보조한다.
- [0042] 제 2 후크(170)는 제 2 벨크로(130)에 인접하게 위치하며, 복수의 제 1 후크(160)들 중 적어도 하나에 걸리도록 구성된다. 제 2 후크(170)는 2개가 한쌍을 이루며 나란히 배치되고, 톱니 형상의 단면을 갖는다. 제 2 실시예에 서는 2쌍의 제 2 후크(170)가 구성된다. 이를 위해 제 2 후크(170)는 플라스틱 사출물이거나 금속의 후크일 수 있다. 제 2 후크(160)는 제 1 후크(160)들 중 하나에 걸림으로써 손목보호대(100)가 손목(180)에 좀 더 강한 조임을 갖도록 보조한다.
- [0043] 제 2 실시예의 착용방법은 제 1 실시예와 유사하다. 다만,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그립부(140)를 제 1 화살 표(190) 방향으로 끝까지 당겨서 제 1, 2 후크(160, 170)가 맞물리도록 한다. 제 1, 2 후크(160, 170)가 맞물 린 상태에서는 그립부(140)를 계속 당기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 도 6의 제 2 화살표(200)와 같이 제 1, 2 벨 크로(135, 130)를 맞물려서 최종적으로 착용을 완성한다. 제 2 실시예에 따를 경우 제 1 화살표(190) 방향으로 끝까지 당길 수 있어서 좀더 확실한 손목 밀착력을 확보할 수 있다.

## [0044] 제 3 실시예의 구성

[0045] 도 8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탄성의 금속 스트립을 갖는 손목보호대의 사시도이다. 제 3 실시예의 구성 중 제 1 실시예에 동일한 구성은 그대로 적용된다. 이하에서는 제 3 실시예의 특징적인 구성과 동작에 대해 설명한다.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보호패드(110)의 볼록면(오목면의 반대면) 상에는 3 ~ 4개의 돌기밴드(210)가 형성된다. 돌기밴드(210)는 규칙적으로 형성된 돌기로 이루어지며, 실리콘 또는 우레탄으로 성형된다. 돌기밴드(210)의 길이방향의 간격은 2 ~ 3cm이며, 돌기밴드(210)는 볼록면의 폭 방향으로 형성된다. 돌기밴드(210)는 손목에 착용하였을 때 손목에 직접 접촉함으로써 손목에 대해 회전하지 않도록 하는 회전 방지기능을 갖는다. 돌기밴드(210)의 돌기는 큰 돌기 하나로 구성될 수도 있다.

#### [0046] 변형 실시예

- [0047] 비록 본 발명은 손목보호대로 도시하고 설명하였으나 발목보호대, 무릎보호대, 관절 보호대로 응용 가능하다.
- [0048] 상술한 바와 같이 개시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당업자가 본 발명을 구현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제공되었다. 상기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당업자는 본 발명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킬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당업자는 상술한 실시예들에 기재된 각 구성을 서로 조합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여기에 나타난 실시형태들에 제한되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개시된 원리들 및 신규한 특징들과 일치하는 최광의 범위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 [0049] 본 발명은 본 발명의 정신 및 필수적 특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특정한 형태로 구체화될 수 있다. 따라서, 상기의 상세한 설명은 모든 면에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고 예시적인 것으로 고려되어야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첨부된 청구항의 합리적 해석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고, 본 발명의 등가적 범위 내에서의 모든 변경은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된다. 본 발명은 여기에 나타난 실시형태들에 제한되려는 것이 아니라,여기서 개시된 원리들 및 신규한 특징들과 일치하는 최광의 범위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또한, 특허청구범위에서명시적인 인용 관계가 있지 않은 청구항들을 결합하여 실시예를 구성하거나 출원 후의 보정에 의해 새로운 청구

항으로 포함할 수 있다.

## 부호의 설명

[0050] 10 : 손목보호대,

20 : 보호패드,

22 : 마감

24 : 제1 벨크로,

30 : 인장밴드,

40 : 그립부,

50 : 제 2 벨크로,

100 : 손목보호대,

110 : 보호패드,

120 : 인장밴드,

130 : 제 2 벨크로,

135 : 제 1 벨크로,

140 : 그립부,

150 : 금속스트립,

160 : 제 1 후크,

170 : 제 2 후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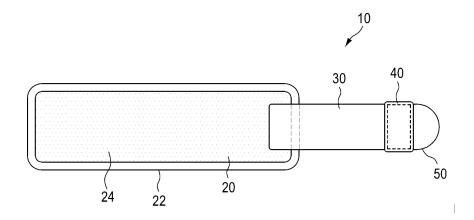
180 : 손목,

190 : 제 1 화살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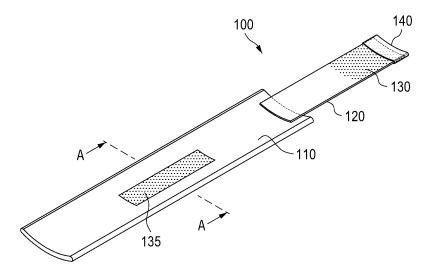
200 : 제 2 화살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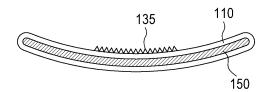
210 : 돌기밴드.

##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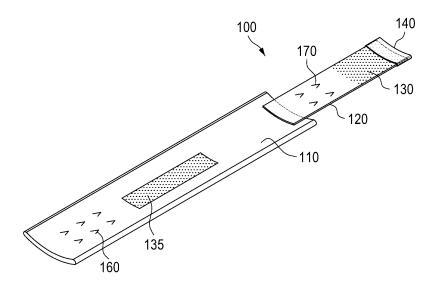


도면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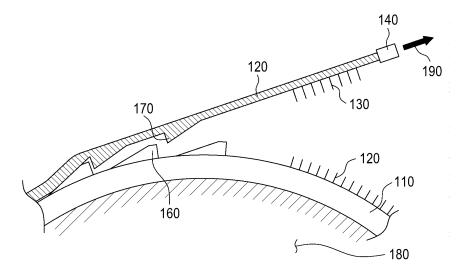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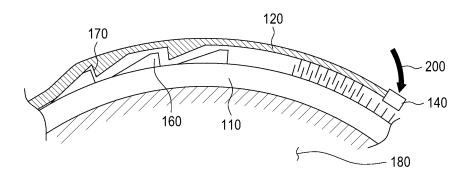


도면4



## 도면5





도면7

